

보도시점 : 2023. 12. 28.(목) 11:00 이후(12. 29.(금) 조간) / 배포 : 2023. 12. 28.(목)

[2023년 국토교통부 정책 돋보기]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60곳 지자체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

- 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시니어 점검원 본격 투입하여 무상 안전점검 시행
...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도 병행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24년에 총 4백 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34억 원, 국비 50%) 하여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 60세 이상, 월 76만 원 지급,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 이번에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 양 부처는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10. 17.) 체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며,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트 점검 웹 개발,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24년부터 그간 안전점검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우려가 큰 민간 경로당(4.6만 개)을 중심으로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시니어 4백명, 2.4만건 점검) → '25년(6백명, 3.6만 건) → '26년(8백명, 4.8만 건) → '27년(1천명, 6만 건)

- 이번에 선정된 집중지원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플랫폼(SFMS)에 데이터(DB)로 구축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받는다.

- 또한, 시니어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 큰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설개량 비용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4년은 국민 생활시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원년으로, '27년까지 은퇴한 기술인 등을 활용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되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3천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부처의 협업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봉섭	(044-201-4598)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문선일	(044-201-484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1-4598)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담당자	서기관/사무관	박광훈/강선명	(044-202-3478/ 3477)



참고 1

24년 집중지원 지자체 및 시니어 점검원 규모

구분	광역명	기초 지자체명	시니어 점검원수	비고
		합 계	400	
1	서울시	양천구(2), 강서구(2), 서대문구(4)	8	
2	부산시	사하구(10), 강서구(2)	12	
3	대구시	달성구(4)	4	
4	인천시	인천시 전체	22	
5	광주시	서구(5), 남구(5), 북구(5), 광산구(5)	20	
6	대전시	서구(4)	4	
7	울산시	중구(4), 남구(5), 동구(8), 울주군(4)	21	
8	경기도	성남시(8), 시흥시(4), 안양시(4), 안성시(20), 하남시(4),	40	
9	강원도	춘천시(4), 원주시(2), 홍천군(2), 횡성군(2)	10	
10	충청북도	청주시(12), 제천시(4), 음성군(10), 단양군(2), 옥천군(10)	38	
11	충청남도	천안시(8), 아산시(9), 당진시(14), 부여군(16), 예산군(4)	51	
12	전라북도	전주시(10), 군산시(6), 진안군(4), 장수군(16), 익산시(10), 임실군(4), 고창군(6), 김제시(10), 순창군(6)	72	
13	전라남도	나주시(12), 영암군(4), 완도군(6), 해남군(10)	32	
14	경상북도	포항시(6), 경주시(8), 구미시(6), 성주군(4)	24	
15	경상남도	창원시(4), 진주시(8), 함안군(4), 창녕군(4), 남해군(6), 합천군(6)	32	
16	제주도	제주시(10)	10	

1. 추진배경

- 경로당은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불분명, 안전점검기준 부재 등으로 실제 점검이 미행 중에 있어 안전사각지대화 우려
 - * 「사회복지사업법」상 경로당은 年 2회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 세부 점검기준이 부재
 - 국토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등에서 요청시 무상점검 지원中 이나, 최근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에 한계*
 - * 지원 가능한 점검 수는 연간 4천 건 수준이나 최근 신청 수는 8천 건이상으로 확대
- 현행 무상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의 한계로 안전상 결함이 확인시, 지자체 등은 정밀안전점검을 추가 시행해야 하나 신속한 조치 지연
 - 또한, 보강 방법이 결정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상 문제로 조치 지연

2. 추진과제

- (제도 정비) 국토부는 IT기반 스마트 웹*을 개발·보급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와 스마트 웹 활용 의무화
 - * 스마트폰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접속하여 18개 점검항목의 영상, 문자정보 등을 입력시 보고서가 자동 생성될 수 있는 점검용 반응형 웹
- (일자리 사업연계) 국토부와 복지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 시니어를 경로당 점검인력으로 단계적 양성(27년 기준 1천명이상)
 - * 복지부는 시니어(60세+a)를 대상의 안전점검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급
국토부는 시니어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전담하여 점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무상점검 고도화) 자체점검결과 안전성 우려 시설(경로당, 어린이 집 등)의 경우 정밀안전점검도 무상지원 및 정보공유 서비스 제공
- (보수·보강 지원)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성 우려 시설은 사업대상 공모시 가점 부여를 통해 우선 선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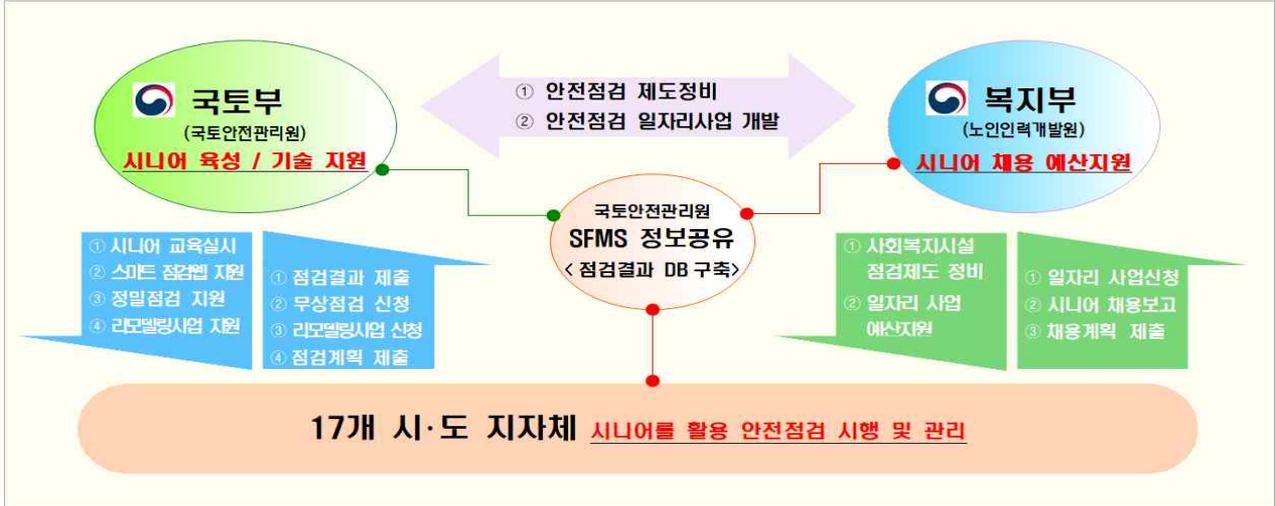
3. 기대효과

- 소규모 취약시설 위험시설 조기 확인과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점검비 2.7천억 원 투자효과와 일자리 3천 개 창출(27년까지 누적)

참고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업현황

기관별 역할 및 협업체계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항

□ (1단계) 시니어 무상 안전점검 및 성과검증



□ (2단계) 안전성 우려 시설 무상 정밀안전점검 지원



□ (3단계)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보수·보강 지원

- 안전성 우려 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을 지원 (보수·보강 등 리모델링 비용 70% 지원)

Q.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

A.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말함

Q.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

A. 소규모 취약시설 수는 전체 8.2만 개이며 이중 사회복지시설이 8.1만 개로 99%로 차지(경로당은 4.6만개 56%, 어린이집 2.1만개 26% 등)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기타 시설물이 1%를 차지하고 있음

Q. 시니어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A. 지자체는 경로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7년 기준으로 연간 900억 원의 안전점검 비용 투자 효과와 매년 시니어 일자리 1천개 이상 창출 가능함

Q. 시니어 안전점검원의 자격요건은?

A. 만 60세 이상 채용 지역 거주자일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분야 (건축·토목)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

※ (60대이상 기술인 현황) 토목건축 분야 12만 명, 3만 명은 무직상태 ('22.12, 기술인협회)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개인 여건상 안전 점검 업무에 차질이 있는 자는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